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6. 9. 14.
북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 7. 19.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6. 7. 19.
 - 다. 상정일자 : 제121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위원회(2006.9.14)
- 상정, 심사, 가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황동연 보건위생과장)

가. 제안이유

- 구민의 건강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2005년 6월부터 시행 실시해온 ‘건강검진 및 운동처방’에 대한 수가 책정과 2005년 12월 특수면역혈청분석기가 도입됨에 따라 혈청으로 검사 가능한 5개 항목의 암검사에 대하여 수가를 책정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보건소 진료비, 건강검진비 등 각종 수수료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하여 그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검사항목 추가 및 수가 책정
 - 검사항목 : 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 검사비용 : 1항목 당 7,000원

○ 건강검진 및 운동처방에 대한 수가 책정

- 검진 및 처방 비용 : 8,000원

○ 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대상 확대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 5. 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참전유공자
-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다. 개정근거

○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4조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지역보건법 제14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9조의2

3.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마포구 보건소에서는 건강검진과 과학적인 체력측정, 맞춤형 운동 처방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2005.6부터 마포문화센터내에 건강증진실을 설치, 무료 건강검진 및 운동처방을 실시하여 왔으나,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재료비, 건강검진 재료비 등을 감안하여 건강검진 및 운동처방에 대한 수가를 책정 시행하려는 것임. 건강검진 및 운동처방 실시는 구민들에게 호평 받고 있는 사업으로, 향후 건강증진실 면적(현재:약17평) 확대 및 인력지원으로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특수면역혈청기를 도입(2005.12)하여 혈청으로 검사 가능한 5개 항목(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전립선암)의 암표지자 검사에 대하여 1항목 당 7,000원의 수가를 책정하였음.

최근 암관련 통계(국립암센터 자료)를 보면, 2004년에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64,731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6.3%가 암으로 사망하였고, 이중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폐암으로 전체 사망자의 20.6%인 13,325명이었으며, 다음으로 위암(17.4%), 간암(16.9%), 대장암(9.1%), 췌장암(4.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암질환은 조기진단만 되면 제때 치료를 하여 완치율을 높일 수 있으나,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 상당히 진행되기 이전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암 관련 검사항목을 신설하는 것은 구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암표지자 검사시약 가격표(마포구 보건소 자료)

(단위 : 원)

검사항목		금액	단가(원)	비고
전립선암검사	AXSYM PSA Reagent	433,000	5,100	공통 시약 포함 가격
	AXSYM PSA standard Calibrator	122,000	720	
	AXSYM PSA control	55,000	330	
췌장암검사	AXSYM CA19-9 Reagent	519,000	6,100	
	AXSYM CA19-9 standard Calibrator	99,000	580	
	AXSYM CA19-9 control	55,000	330	
간암검사	AXSYM AFP Reagent	235,000	2,770	
	AXSYM AFP standard Calibrator	122,000	720	
	AXSYM AFP control	55,000	330	
대장암검사	AXSYM CEA Reagent	369,000	4,350	
	AXSYM CEA standard Calibrator	122,000	720	
	AXSYM CEA control	55,000	330	
난소암검사	AXSYM CA125 Reagent	402,000	4,730	
	AXSYM CA125 standard Calibrator	99,000	580	
	AXSYM CA125 control	55,000	330	
공통시약	AXSYM MUP	62,000	20	
	AXSYM Line Diluent	46,000	100	
	AXSYM Matrix cell wash solution	46,000	20	
	AXSYM Matrix cell	44,000	540	
	AXSYM Reaction vessel	44,000	520	
	AXSYM Probe Clean Solution	77,000	50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윤동현 위원) : 20년이상 장기복무하고 퇴직한 경찰관도 대상이 될 수는 없는지?
- 답변요지(황동연 보건위생과장) : 전직 경찰관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협조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음.
- 질의요지(박영길 위원) : 건강검진 및 운동처방에 대한 수가 8,000원이 많다고 보는데?
- 답변요지(박유미 의약과장) : 타구에 비하여 저렴함.
- 질의요지(채재선 위원) : 법률이 개정되면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여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늦게 개정하여 구민들의 혜택이 늦어지는데, 앞으로는 법률개정 즉시 조례를 개정하기 바람.
- 답변요지(황동연 보건위생과장) : 잘 알겠습니다.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6.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구민의 건강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2005년 6월부터 시험 실시 해온 '건강검진 및 운동처방'에 대한 수가 책정과 2005년 12월 특수면역혈청분석기가 도입됨에 따라 혈청으로 검사 가능한 5개 항목의 암검사에 대하여 수가를 책정하고, 국가보훈대상자등에 대한 보건소 진료비, 건강검진비 등 각종 수수료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하여 그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개정골자

가. 검사항목 추가 및 수가 책정

- 검사항목 : 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 검사비용 : 1항목 당 7,000원

나. 건강검진 및 운동처방에 대한 수가 책정

- 검진 및 처방 비용 : 8,000원

다. 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대상 확대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 5. 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참전유공자
-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3. 개정근거

가. 관계법령

-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4조
- (5)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 (6)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7) 지역보건법 제14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9조의2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06. 5. 11 ~ 2006. 5. 31(특이사항 없음)
-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강검진 및 운동처방

제3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하고 제8호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등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제2조관련 별표 수수료액표의 제4호 검사란중 라목 및 제7호를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구 분	종 류	단 위	금 액	비 고
4. 검사	라. 암표지자검사(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1항목	7,000원	* 무료대상자 - 1·2종의료급여 수급권자 - 1·2급 장애인
7.운동처방	건강검진 및 운동처방	1회	8,000원	* 무료대상자 - 1·2종의료급여 수급권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② 다음 각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 표와 같다 1~6(생략) <신 설>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② (현행과 같음) 1~6(현행과 같음) <u>7. 건강검진 및 운동처방</u>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7(생략) <u>8. 기타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u> <u>“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u> <u>정하는 보건의료사업</u> <신 설>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② (현행과 같음) 1~7(생략) <u>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u> <u>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u> <u>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u> <u>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이상 장</u> <u>기복무 제대군인등의 수수료 또는 진료</u> <u>비중 본인부담금</u> 9. (현행 제8호와 같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수수료액표					〔별표〕 수수료액표				
구분	종목	단위	금액	비고	구분	종목	단위	금액	비고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검사	가 ~ 다 (생략)				4.검사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설>					라. 알표 지자 검사 (간암, 대장 암, 췌장암, 난소암, 전 립선암)	1환 목	7,000원	· 무료대상자 1.2종의료 급여 수급 권자 1.2급 장애인
5 ~ 6 (생략)					5 ~ 6(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7.운동 처방	건강검진 및 운동처방	1회	8,000원	· 무료대상자 1.2종의료 급여 수급 권자